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안 제21조의5,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9,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57조)

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정보의 처리, 상담·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함

나.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신고 등의 청구를 해야하는 구체적 사유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중상해 사건 관련 기초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제4호)

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마.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마련(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주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및  
제56조)

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12 신설 및 제57조)

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관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17)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행위자에게”를 “아동학대 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친권상실 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친 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사유를 말한다.

1. 친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결정이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 친권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어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3호”를 “법 제22조 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 족 및”을 “가족,”으로, “한다)에”를 “한다) 및 법 제3조제8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6항제7호”를 “법 제22조제7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판단위원회 :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판단위원회 :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으로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

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아동 교육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
2. 피해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아동학대사례판단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각각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각각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

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6조의3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3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4제2항”을 “법 제29조의4제5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3항”을 “법 제29조의4제6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8제1항 중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에게”를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을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26조의9제4항제5호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아동학대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학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무조정실·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장원의 임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항을 위반하여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등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아동학대특별위원회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법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의 당사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아동학대특별위원회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2.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4. 위원의 사용인(使用人)이거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⑧ 아동학대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2조제7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제57조제3항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에 관한 사무

나.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3호	500	1,0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5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의2]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

1.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20년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 나.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조사, 상담, 아동학대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 전반에 관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포함한다)
  - 다.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상담·치료 및 교육 등 지원, 사례점검,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10년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고가 접수된 아동, 아동의 가족,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 나.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조사, 상담, 아동학대사례판단 등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판단 전반에 관한 정보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생 략)</p> <p>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u>아동학대행위자에게</u>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u>----- --.</p> <p>1. ~ 4.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의4(친권상실 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u></p> <p><u>1. 친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결정이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u></p> <p><u>2. 친권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u></p>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생략)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상의 장애가 있어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  
-----  
-----.

<삭제>

2. (현행과 같음)

3. -----  
----- 가족, -----  
-----  
----- 한다) 및 법 제3조제8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아동학대사례

4. (생략)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관리대상자”라 한다)에-----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7항제7호-----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 사실 확인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  
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  
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  
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판단위원회 : 시

·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판단위원회 :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으로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아동 교육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  
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  
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  
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  
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  
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  
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  
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

2. 피해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생략)

③·④ (생략)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생략)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

1. 아동학대사례판단의 -----  
-----  
--

2.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2. (현행과 같음)

3. ----- 피해아동의 ---  
-----  
--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당하는 목적

가. (생략)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  
변 보호

다. ~ 마. (생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  
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다. (생략)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  
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  
한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

가. (현행과 같음)

나. ----- 피해아동의 --  
-----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가.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  
대사례관리대상자-----

-----

나.·다.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  
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  
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  
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6. (생략)

⑤ (생략)

<신설>

-----  
-----.

1. ~ 4. (현행과 같음)

5. -----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아동학대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학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무조정실 · 교육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장원의 임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항을 위반하여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등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아동학대특별위원회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

여한 경우

4. 법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당사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아동학대특별위원회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2.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4. 위원의 사용자(使用人)이거나

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⑧ 아동학대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학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3. (생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6. (생략)

② (생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  
-----  
-----.

1.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2. 3. (현행과 같음)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피해아동의 -----  
-----

5.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

1. (생략)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생략)

③ 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

1. (현행과 같음)

2. -----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  
관 폐쇄요구 등

4.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  
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  
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 ⑦ (생략)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4.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 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생략)

<신설>

나. (생략)

4. 5. (생략)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법 제22조제 8항 -----  
-----

3. -----  
-----  
-----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 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사망사건분석,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형사사법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다. (현행 나목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6. -----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  
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  
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  
력·관리에 관한 사무

<신 설>

7. (생 략)

④ (생 략)

-----  
-----  
-----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

6의2.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아동학대특별위원회  
의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  
석에 관한 사무

나.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381